

20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 2006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도 만5세아의 경우 매월 최고 15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 '06 연령별 지원단가(1인/월)
 - 보육료(보육시설) : 0세 155천원, 1세 154, 2세 127, 3-4세 79, 5세 158
 - 교육비(유치원) : (3-4세) 국공립 28천원, 사립 79 (5세) 국공립 56, 사립 158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 2006년 1월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 등의 여성농어업인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 지원금액은 만0-1세 77천원, 2세 63천원, 3-4세 40천원, 5세 79천원을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젊은 여성의 농어촌거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7))

- 2006년 1월부터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 영농도우미는 65세 미만,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 사고(농작업, 농기계, 교통사고 등)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되며, 도우미 임금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역농협(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 또는 편조손가정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역농협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농가를 파악하여 도우미를 연계 지원하게 됩니다.
-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일손을 대행해 줄 도우미 역할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1.22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개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종 구분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 축사관련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5.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 2005년부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 읍면지역과 시지역중 녹지지역, 특별시·광역시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04년 22%에서 30%로, '05년 30%에서 40%로 확대한데 이어 '06년부터는 50%로 추가 확대 실시
 - ('03)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6.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1))

- 2005.9.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9.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내년 10월부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별표1. 1. 가. (8). (나)]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별표1. 1. 가. (2). (나)]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
 -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1. 1. 가. (11). (나)]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가]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 유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나]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 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서 2007.1.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 ※ 예외 : 주표시면이 30cm²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됨.[별표1 제1호 가목 (8) (가)의 규정, 제1호 가목 (10) (가) 1) 및 2)]

